

照)

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·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5. 12. 15

내무위원회

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95. 11. 24
- 나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95. 11. 24
- 라. 상정 및 의결
 - 제4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기회
 - 제6차 내무위원회 상정 : 95. 12. 11
 - 제6차 내무위원회 의결 : 95. 12. 11

제안설명요지(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김치권)

가. 제안사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도록 개정.

나. 주요골자

-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관의 게시 → 구공보에 게재로 개정
- 지방의회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로 개정

다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9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

3. 검토의견(전문위원 : 최영찬)

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조례와 규칙 등의 공포 방법의 개정으로 공보나 일간신문 게재 및 게시관 게시를 구공보에 게재를 하는 방법 변경과 지방의회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로 조례문항의 자구를 수정하는데 있으므로 본조례개정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<p>○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·규칙을 공포시 구공보에만 게시하지 말고 반회보 특보에도 게재하여 구민에게 홍보할 수 없는지?</p>	<p>○ 조례·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사항은 본조례개정에 의거 구공보에 게시하지만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반회보 특보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</p>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·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안	95-49
호	

제출년월일 : 95. 11.
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
(기획감사실)

제안이유

-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.

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9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

주요골자

-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 → “구공보 게재”로 개정(안 제7조)
- “지방의회”를 “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”로 개정(안 제3조·제5조·제6조제3항)

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자치법규등”을 “조례·규칙등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지방의회”를 “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동조 제2항 및 제5조·제6조제3항중 “지방의회”를 “구의회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공포방법등)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구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관의 게시로써 한다.

② 고시 또는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,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고시·공고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구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관에 게시된 날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·규칙 및 예산(이하 “자치법규등”이라 한다)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..... <u>조례·규칙등</u>

현행	개정 (안)
<p>조례(조례) ① 조례의 전문에는 <u>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</u>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</p>	<p>제3조(조례) ①.....<u>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</u>.....</p>
<p>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<u>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,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</u></p>	<p>②.....<u>구의회</u>.....<u>구의회</u>.....<u>구의회</u>.....</p>
<p>제5조(예산등)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<u>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.</u></p>	<p>제5조(예산등).....<u>구의회</u>.....</p>
<p>제6조(번호) ① ~ ② (생략) ③ <u>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6조(번호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구의회</u>.....<u>구의회</u>.....</p>
<p>제7조(공포방법) 조례·규칙등을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공포방법등) ① <u>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구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</u></p>

현행	개정(안)
<p>제8조(공포일) ① 조례·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나 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관에 게시된 날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관의 게시로써 한다.</p> <p>알고시 또는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,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8조(공포일)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고시·공고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구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관에 게시된 날로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